



보 건 복 지 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및 협조요청

1. 관련

가. (복지부) 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(V-1판) 개정사항 안내(보육기반과-4649호, 2020.7.22),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등(보육기반과-5205, 2020.8.18)

나. (교육부) 대학 학사운영 권고(대학학사제도과-3695, 2020.3.4.), 출석수업 기반 학점은행제 운영 권고(평생학습정책과-2269, '20.3.6.), 교육실습(학교현장실습) 운영 안내(교원양성연수과-1706, '20.3.24.), 교육실습 등의 이수방안 연장적용 안내(교원양성연수과-4378, 2020.8.5)

다. (복지부)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 보완 안내 및 협조 요청(보육정책과-2986호, 2020.5.1), 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보완 운영 계획 보고(보육정책과-5195호, '20.8.21.)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공문(혁신행정담당관-2296호, '20.8.21)

2. 우리 부에서는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교육부의 교육실습 등의 이수방안 연장적용 상황 등을(위 나호) 고려, 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3. 이에, 교육부(관련 과)에서는 대학 등 학사정책 운영에 참고하시고, 관련 기관(산하 기관 포함) 및 단체 등에 안내(특히, 아래 ①, ③)하여 주시기 바라며,

-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등에 안내하고, 양성기관에서 자격인정 범위에 맞게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면교과목 및 실습 운영방식 변경·이행 시 보고받는 등의 적정 관리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각 지자체에서는 장기미종사자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관할 어린이집 및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안내하고, '20.8월말 현재까지 어린이집 근무 중이나 장기미종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기 운영중인 보수교육 과정(온라인특별직무교육 과정 포함)을 통한 교육 이수 시에도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① 보육교사 양성교육 과정 운영

- (대체수단* 인정 기간) '20.2학기 지속 적용,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

* 대면교과목의 집중 수업 및 실시간 화상수업 허용, 6주 실습을 4주 직접실습과 2주 간접실습으로 조정

- (대면교과목) 출석 확인이 가능한 수업방식(동시적 원격수업?원격시험) 인정 및 코로나 확진자(또는 자가격리, 유사증상 발현자)에 대한 교육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수업, 시험 실시 인정(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)

- (보육실습) 2회 이상 분할 실습 가능, 코로나 확진자(또는 자가격리, 유사증상 발현자)에 대한 직접실습에 준하는 간접실습 허용(자체 교육과정 운영, 코

